



제30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6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9. 12 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남양주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교육 및 환자의 자가 관리를 지원할 능력 있는 법인 선정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대응 필요
-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내용
 - 고혈압·당뇨병 환자 조기발견·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
 -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연계·등록 지원
 - 고혈압·당뇨병 등록자 관리 및 상담(자동응답안내, 직접전화, 진료안내문자)
 - 지역주민 대상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(지역 캠페인)
 -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예방·관리·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- 고혈압·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
- 위탁시설 개요

- 시 설 명 : 남양주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
- 인력현황 : 10명(센터장 1, 팀장 1, 행정 1, 운동처방사 1, 간호사 3, 영양사 3)
- 소 재 지 :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(별관 2층)
- 규 모 : 205.27m²(62평)
- 지원시설 : 교육실, 상담실, 사무공간, 운동실, 창고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- 자격요건 :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(교) 또는 의료법인이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
- 선정방법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80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※매 회계연도 질병관리청 확정내시 기준으로 예산액 변동
- 인건비 396,378천원, 운영비 177,422천원, 여비 5,400천원, 자산취득비 800천원

○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남양주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30조(권한의 위임 등),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위임 및 위탁)에 의거하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관리와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관련 법령 및 조례, 질병관리청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

구 분	검 토 의 견
경제적 효율성	○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표준 운영비로 전문인력을 구성·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업무추진에 효율적임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전문인력 10명(센터장 1명, 팀장 1명, 행정 1명, 운동처방사 1명, 간호사 3명, 영양사 3명)으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환자 현황, 교육 현황, 월별실적 및 예산 사용 보고를 통한 정량·정성적 성과 측정 용이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·감독, 성과평가함으로써 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증가는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므로 선형질환인 고혈압·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임
총 합 의 견	<p>○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중·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전담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, 지역사회 고혈압·당뇨병 환자관리, 예방교육, 캠페인, 조기 발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</p> <p>○ 증가하는 우리 시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, 맞춤형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무운영 및 행정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</p>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건강증진과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남양주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

- 해당 사무는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하여 수행해 온 사무로 사무의 특성상 「심뇌혈관질환법」 제20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나

- 확인결과 그 동안 동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

☑ 「지역보건법」

-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**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實費)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☑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

-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**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-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.
-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, 실비보조,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

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☑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비용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
2.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
3.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
4.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
5.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

제20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,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☑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☑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위탁기간의 변경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3.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